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9. 18.

도시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후환경과)
- 발의일자: 2025. 9. 3.(수)
- 회부일자: 2025. 9. 3.(수)
- 상정 및 의결: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5. 9. 18.)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을 명시하고 개정된 내용에 맞게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법령과 중복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2조)
- 용어 및 내용 개정(안 제7조)
- 관련 다른 조례 개정(부칙)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9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5. 7. 21.~8. 11.):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최윤미)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을 명시하고 개정된 내용에 맞게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2조(정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함.
- 안 제7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2021.1.5.)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021.7.6.)의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던 계획의 기간을 삭제함.
-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2024.8.12.)시 다른 조례의 개정에 미반영된 사항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규정된 “대구달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근거를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제12조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5조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반영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약: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